

忠清北道議會 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

忠清北道議會 委員會條例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第3條(常任委員會 職務와 그 所管)

- ① 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議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- ② 常任委員會 所管은 다음과 같다.

1. 內務委員會

- 가. 企劃管理室, 公報官室, 內務局, 財務局, 民防衛局, 公務員教育院, 曾坪出張所, 自然學習園, 興德寺社管理事務所 所管에 속하는 事項
- 나. 法制 內務行政에 관한 事項

2. 文教社會委員會

- 가. 教育廳, 保社環境局, 家庭福祉局, 保健環境研究院, 女性會館 所管에 속하는 事項
- 나. 文教社會 및 保健에 관한 事項

3. 產業委員會

- 가. 農漁村開發局, 農林水產局, 地域經濟局, 農村振興院, 農民教育院, 農產物原種場, 蟻業檢查所, 家畜衛生試驗所, 治山事業所, 林業試驗場, 種畜場, 蟻種場, 內水面漁業開發試驗場, 道有林事業所, 農漁村工業誘致事業所
- 나. 農漁村開發, 農林水產, 地域經濟 및 交通觀光에 관한 事項

4. 建設委員會

- 가. 建設都市局, 公營開發事業團, 道路管理事業所에 속하는 事項
- 나. 建設都市開發에 관한 事項

5. 議會運營委員會

- 가. 議會運營에 관한 事項
- 나. 議會事務處所管에 속하는 事項
- 다. 會議規則 및 議會運營과 關聯된 各種規則에 관한 事項

附 則

1.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

新・舊條文對比表

現 行	改 正 案
<p>第3條(常任委員會의 職務와 그 所管) ① 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議案과 청원심사를 處理하는 職務를 행한다.</p> <p>② 常任委員會의 所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內務委員會</p> <p>가. 企劃管理室, 內務局, 民防衛局, 公務員教育院, 自然學習園所管에 속하는 事項</p> <p>나. 法制內務行政에 관한 事項</p> <p>2. 文教社會委員會</p> <p>가. 教育委員會, 保健社會局, 家庭福祉局, 保健環境研究所所管에 속하는 事項</p> <p>나. 文教社會 및 保健에 관한 事項</p>	<p>第3條(常任委員會의 職務와 그 所管) ① 좌동</p> <p>② 常任委員會의 所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內務委員會</p> <p>가. 企劃管理室, 公報官室, 內務局, 財務局, 民防衛局, 公務員教育院, 曾坪出張所, 自然學習園, 興德寺社管理事務所所管에 속하는 事項</p> <p>나. 좌 동</p> <p>2. 文教社會委員會</p> <p>가. 教育廳, 保社環境局, 家庭福祉局, 保健環境研究院, 女性會館 所管에 속하는 事項</p> <p>나. 좌 동</p>

現 行	改 正 案
<p>3. 產業委員會</p> <p>가. 農林局, 殖產局, 地域經濟局, 農村振興院, 農民教育院, 農 產物原種場, 家畜衛生試驗所, 治山事業所, 林業試驗場, 種 畜場, 蠶業檢查所, 蠶種場, 內 水面 開發試驗場,</p> <p>나. 農林商工 및 交通觀光에 관 한 事項</p>	<p>3. 產業委員會</p> <p>가. 農漁村開發局, 農林水產局, 地域經濟局, 農村振興院, 農 民教育院, 農產物原種場, 蠶 業檢查所, 家畜衛生試驗所, 治山事業所, 林業試驗場, 種 畜場, 蠶種場, 內水面漁業開 發試驗場. 道有林事業所, 農 漁村工業誘致事業所 所管에 속하는 事項</p> <p>나. 좌 동</p>
<p>4. 建設委員會</p> <p>가. 建設局, 公營開發事業團, 道 路管理事業所에 속하는 事項</p> <p>나. 建設開發에 관한 事項</p>	<p>4. 建設委員會</p> <p>가. 建設都市局, 公營開發事業團, 道 路管理事業所에 속하는 事項</p> <p>나. 建設都市開發에 관한 事項</p>
<p>5. 議會 運營委員會</p> <p>가. 議會運營에 관한 事項</p>	<p>5. 議會 運營委員會</p> <p>가. 議會事務處所管에 관한 事項</p>

14<第75回－第2次附錄>

現 行	改 正 案
<p>나. 議會事務局所管에 속하는 事項</p> <p>다. 會議規則 및 議會運營과 關 聯된 各種 規則에 관한 事項</p>	<p>나. 議會運營에 관한 事項</p> <p>다. 좌 동</p>

修正案 條文 對比表

現 行	改 正 案	修 正 案
<p>5. 議會 運營委員會</p> <p>가. 議會運營에 관한 事項</p> <p>나. 議會事務局所管 에 속하는 事項</p> <p>다. 會議規則 및 議 會運營과 關聯된 各種 規則에 관 한 事項</p>	<p>5. 議會 運營委員會</p> <p>가. 議會事務處所管 에 관한 事項</p> <p>나. 議會運營에 관한 事項</p> <p>다. 좌 등</p>	<p>5. 議會 運營委員會</p> <p>가. 議會運營에 관한 事項</p> <p>나. 議會事務處所管 에 관한 事項</p> <p>다. 좌 등</p>

(참고)

●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[1 9 9 1 . 2 . 1]
〔大統領令第13275號〕

改正 1991.4.23 大統領令第13358號(市·郡의 소방서직제)
1991.7. 1 大統領令第13419號(서울특별시의구직제)
1991.7.15 大統領令第13427號
1991.7.23 大統領令第13431號(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)

第3條(道) ① 道의 行政事務를 分장하기 위하여 企劃管理室·內務局·財務局·保社環境局·家庭福祉局·農漁村開發局·農林水產局·(江原道·全羅南道 및 慶尙南道의 경우를 除外한다)·農產局(江原道의 경우에 한한다)·農林局(全羅南道와 慶尙南道의 경우에 한한다)·水產局(全羅南道와 慶尙南道의 경우에 한한다)·山林局(江原道의 경우에 한한다)·地域經濟局·建設都市局(京畿道의 경우는 建設局과 都市局으로 한다) 및 民防衛局을 둔다. 다만, 濟州道에는 企劃管理室·內務局·保社環境局·家庭福祉局·地域經濟局·殖產局·交通觀光局·開發局 및 民防衛局을 두되, 內務局은 다른 道의 內務局에 속하는 事務와 財務局에 속하는 事務를, 地域經濟局은 農業·農地·農地改良·修理 및 畜業에 관한 事務와 다른 道의 地域經濟局에 속하는 事務(觀光 및 運輸에 관한 事務를 제외한다)를, 殖產局은 양정·畜產·草地開發 및 水產에 관한 事務를, 交通觀光局은 觀光·運輸 및 山林에 관한 事務를, 開發局은 地域開發·建設 및 都市에 관한 事務를 分장한다. <개정 91.7.15, 91.7.23>

② 企劃管理室은 道 行政의 企劃·調定·審查分析·豫算·投資審查·監查·統計·公報, 條例·規則의 審查, 訴訟事件 및 法規의 編纂에 관한 事務를 分장한다. <改正 91.7.15>

③ 內務局은 庶務·保安·地方行政·行政區域·人事·새마을·選舉·國民投票, 地方自治團體의 指導·監督, 生活體育·文化·藝術 및 다른 室·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務를 分장한다. <改正 91.7.15>